

저출산 국가위기의 대처 방안

손영수

세종대학교 석좌대학

오늘날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추세와 함께 초고속의 고령화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와서야 국가위기의 관점에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2005년 합계출산율 1.08명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현재의 최악의 상황을 탈출하기 위하여 이미 2005년 5월 18일 제정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법률 7496호)’을 근간으로 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또다시 선언적 의미뿐인 미봉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우리나라 사회전반에 걸쳐 있는 저출산 관련 문제들의 뿌리가 너무 깊고 완고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의 국가위기는 한두가지 단편적인 문제에 대한 급조된 미봉책으로 꾸며진 구식의 인구정책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군으로서, 결혼, 출산, 육아, 교육, 건강 및 질병관리, 노화 등의 개인의 생활사와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 연계된 통합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나 정책관련 담당자들은 잊지 않았으면 한다.

주제어: 저출산, 국가위기, 통합적해결책

1. 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와서야 국가위기의 관점에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2005년 3월 14일 정부는 관련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조선일보, 2005. 3. 15).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국회에서는 2005년 5월 18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법률 7496호)’을 제정하였고, 이에 뒤이어 기본법의 2005년 9월 1일 시행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19027호)’을 제정하였다.

정부가 이와 같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가까운 장래에 급격한 인구감소로 말미암아 취학 아동의 감소, 군입대 병력의 감소, 국가의 필요에 따라 양성해야 하는 인재의 Pool이나 경제적 유효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국가 경쟁력의 상실과 국민총생산의 감소 등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차적으로 연금 및 건강보험 제정의 악화와 같은 국가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평균수명의 연장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2005년 9.1%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율이 2023년에는 20.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어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사회가 지니는 사회·경제적 문제점들이 현실적인 과제로서 이미 대두하기 시작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¹⁾은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이었고, 2004년에는 1.16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였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상태로, 정부는 우선 중간목표로서 출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1.6명으로 높인 후 장기적으로는 1.8명 수준까지 올리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2005년 5월 8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5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의하면 지난해의 합계출산율은 2004년의 1.16명에서 1.08명으로 감소하여 또 다시 최저기록을 갱신하였다. 본고에서는 장기적으로 심각한 국가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문제에 대하여 현실적 상황을 살펴 보고, 사회 각계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관련 문제들의 원인을 분석해 봄으로써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저출산의 실태

1. 2005년 출생통계

2006년 5월 8일 통계청(www.nso.go.kr)이 발표한 '2005년 출생통계 잠정집계'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출생아는 총 43.8만명으로 2004년 47.6만명보다 3.8만명이 감소했고, 2005년 조(粗)출생율¹⁾은 약 9.0명, 2005년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집계되어, 총출생아의 수, 조출생율 및 합계출산율에서 모두 또다시 사상최저기록을 갱신하였다.

지난해의 가임여성 인구 역시 1,367만명으로 전년(2004년)의 1,372만9천명에 비해 5만9천명이 줄어 들어 이와 같은 저출산의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해당 지역에 사는 가임여성(15세-49세) 1명이 현재의 추세대로 아기를 낳는다고 가정할 때, 평생 몇 명의 아기를 출산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 주는 지표로서 여성이 낳은 출산아의 수가 늘어날수록 증가한다. 이 합계출산율은 해당 지역에 가임여성이 많이 사느냐 혹은 적게 사느냐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지역 사람들의 출산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2) 인구 1천명당 출생아수.

우리나라의 2005년 합계출산율의 수준을 선진국의 2004년 합계출산율과 비교해 보면, 미국의 2.05명, 프랑스의 1.74명, 영국의 1.74명, 일본의 1.29명에 비해 월등히 낮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상황의 수준이다(서울경제, 2006. 5. 8). 또한 1.08명이라는 합계출산율은 세계최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출산율감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되고 있었던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의 경우에는 일정 수준까지 감소한 뒤 계속적으로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거의 세계 최저의 수준에 도달해 있으면서 현재로서는 감소세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별로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

2. 저출산 관련 문제

오늘날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추세와 함께 초고속의 고령화를 겪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이러한 고령화의 문제와 결합하여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그 심각함과 복잡함에 충격을 더 하고 있다.

지금의 저출산의 추세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고속 고령화와 맞물려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부문에 있어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최성락, 2004). 첫째, 저출산·고령화는 국력의 인적 저장고로서의 전체 인구의 감소와 함께 직접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인구의 감소, 노동의 생산성 저하,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저축률 하락, 국내 소비시장의 위축, 투자위축 및 재정수지의 악화 등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둘째, 21세기 고령사회에서 늘어만 가는 노인에 대한 부양비용과 사회보장비용의 증가 등 국가적·사회적 부담의 증가는 젊은 층에만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되고 이는 분배와 재분배를 둘러싼 세대간의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여 국가적으로 심각한 분열을 초래하여 국가의 존립위기로 발전할 수도 있다. 셋째, 저출산·고령화는 노동의

양적·질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 외에도 산업구조의 변화를 비롯한 환경변화와 맞물려 임금제도 및 정년제도 등 고용관행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출산율의 하락에 따른 청년인구의 감소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및 경제의 활력이 저하될 수 있다.

III. 저출산의 원인과 해법

1. 저출산의 원인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진 표면적인 이유로는 초혼 평균연령의 증가, 결혼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불임환자의 증가, 자녀의 양육·교육비 부담의 증가 등 인구통계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인구학적 및 생물학적 요인들이 흔히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와 같은 표면적인 이유 이외에 사회적·경제적·역사적·문화적인 요인들이 더욱 깊이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최근의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는 우리나라에 한정하여 원인을 찾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원인의 큰 부분을 놓칠 수 있으므로 사고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각 국가마다 다양한 요인들이 가족규범과 결합하면서 국가간의 출산율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어느 나라든 혼인율의 저하가 핵심이 된다. 서유럽은 동거의 장기화로 인한 첫 자녀 출산지연, 동유럽은 첫 자녀 출산연령은 이르나 둘째자녀를 가지는데 어려움, 남유럽과 동아시아는 결혼진입 자체의 지연으로 인한 첫 자녀 출산지연이 저출산의 주요한 특징이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국가별로 각 국가 특유의 경제적 요인, 젠더요인 및 가족규범, 육아의 사회적 지원 등의 사회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장혜경, 2004).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구통계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인구학적 및 생물학적 요인으로서 취업난, 고용불안정 등의 국가 경제 상황의 악화에 주로 기인하고 있는 혼인지연이 저출산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역사적·문화적인 요인으로는 21세기에 들어 많이 쇠퇴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문이나 부모의 얼굴을 빚낼 수 있는 소수 정예 자녀의 성공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않는 한국 부모의 희생정신, 자녀 교육에 필요한 현실적 투자의 증가, 여성의 고학력화에 이은 시간 기회비용의 증가 등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법률 7496호)’이 제정되던 안명옥(2004)은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추세의 원인에 대하여 종합·분석하였는데 이에 대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을 인생의 중요한 의무로 생각하던 전통적 결혼가치관으로부터의 이탈로서 이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둘째, 여성의 자아실현욕구 및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서 여성의 취업률 증가는 여성의 내적 욕구의 실현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외적으로는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가계유지가 힘든 경제적 현실에서 좀 더 여유있는 생활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반강제되는 측면도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육아 및 자녀교육에 들일 수 있는 시간의 절대감소와 양육·교육비의 부담 및 가사의 운영·유지비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초혼연령의 상승과 독신자의 증가로서 1960년에 남자 25.4세, 여자 21.6세이던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3년에는 남자 30.1세, 여자 27.3세이었다고 하였다. 이는 교육기회의 확대에 동반된 자아성취 욕구의 증대 및 교육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사회진출 연령이 높아진 것도 부분적인 원인이지만, 청년실업의 증가, 비정규 근로직의 확대 등에 따른 고용의 불안정 및 결혼과 주거마련 비용의 어려움이 결혼을 결심하는데 보다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초혼연령 상승은 출산모의 평균연령 상승으로 이어져 사회적·심리적·의학적 측면에서 출산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넷째, 자녀관의 변화로서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생

각이 1991년에는 90.3%이었던 것이 급속하게 떨어져 2003년에는 54.5%이었다고 하였다. 이는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전통적 농경사회에서부터 산업사회, 정보사회로의 이전을 겪으면서 자녀에 의존하여 노후를 대비하려는 생각과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전통적 관념의 쇠퇴때문으로 보인다. 다섯째, 가족의 유대와 안정성의 저하로서 전통적으로 가정이 가져 왔던 가족구성원의 안정유지와 건강과 갈등의 해소의 기능이 오늘날에는 크게 약화되고 있다.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의 사고방식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 개인주의적으로 변화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정이 건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장과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안명옥(2004)이 종합·분석하여 지적한 이러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추세에의 원인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 상황이며, 그러한 추세는 지금도 그 급한 몰살을 멈출 줄 모른다는 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다.

2. 국가의 저출산 대책

2004년 1월 19일 정부가 수립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에서 제시한 저출산 대책은 다음과 같다(양동교, 2004).

첫째, 저출산 현상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가치관이 관여하고 있는 문제로서, 젊은 층에 만연하고 있는 지나친 개인주의를 완화시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켜 나간다. 둘째,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과도한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중산층 인구들이 과도한 교육비 등으로 자녀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한다. 넷째,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기 위하여 세금감면, 주거지원 강화, 교육비 지원 확대 등의 정부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다섯째, 오늘날 건전한 가정관과 결혼관의 확립을 통한 출산장려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당장 시급하게 인구의 양적 감소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신·출산 과정의 강화된 의학적 관리, 영유

아의 질병관리와 성장관리, 청소년의 성교육 및 사회적 성장의 보호 및 성인의 건강관리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구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여섯째, 최근 의료법의 개정³⁾으로 인하여 현재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강하게 남아 있는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한 여아에 대한 불법 낙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불법 낙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는 2004년 6월 제46회 국정과제회의 보고에서 영유아의 보육과 유아교육을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수용하여 신생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육아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의 기본 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양동교, 2004).

첫째, 0세아에 대해서는 가정에서도 육아가 가능하도록 산전·산후 휴가의 확보, 육아휴직의 활성화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취업모의 육아를 지원하고, 미취업모에 대해서는 육아지원센터를 통해 부모지원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육아정보의 제공과 육아상담 등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 차원에서 양질의 보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0세에서 4세 사이의 아동의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을 70%수준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서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을 통해 2008년에는 원칙적으로 평균소득의 도시근로자 가구까지로 지원대상 아동을 확대하고, 특히 소득수준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등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 50%이하인 영세가구에 대해서는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셋째, 만5세 아동은 저소득층부터 무상교육과 보육을 시행하여 2007년에는 전체 만5세 아동의 70%에 해당하는

3) 태아성감별과 여아에 대한 불법 낙태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1987년 11월 28일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제19조의 2를 신설하였다. 본 조는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①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진료의 내용에 대한 부당한 간섭의 의도가 아니라, 여아에 대한 불법낙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평균소득의 도시근로자 가구까지 확대 지원한다. 넷째, 6세에서 8세 사이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대해서는 취업도의 만족도를 고려한 방과 후 보육, 특성교육 및 적성교육을 시행하여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04년 9월 30일 ‘임신에서 출산까지’ 발생하는 각종 의료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의 지원을 다음과 같이 대폭 확대하여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다(양동교, 2004).

첫째, 제왕절개분만을 낮추고, 자연분만시에는 입원료, 분만비 등 모든 보험진료비에 대해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둘째, 신생아실 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조산아와 저체중 미숙아에 대한 모든 보험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폐미성숙아의 치료제인 서펙텐 사용에 대하여 3회의 보험제한 기준을 없앤다. 셋째,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시행되는 주요 산전검사인 풍진검사와 기형아검사인 Triple Test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정부는 자연분만에 대한 요양급여와 신생아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로 받은 본인부담 입원진료비를 면제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하여 개정령을 2004년 12월 31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⁴⁾. 그리고 또 다시 2005년 12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출산 장려 및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⁵⁾.

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 2의 4호: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분만에 대한 요양급여와 모자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생아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590호, 2005. 7. 13. 공포; 2006. 1. 1. 시행)되어 국민건강보험의 임의가입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및 제외국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적용대상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출산 장려 및 아동 의료비용에

이상과 같은 각종 출산지원책을 마련하고, 그 일부는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5월 8일 통계청(www.nso.go.kr)이 발표한 ‘2005년 출생통계 잠정집계’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출생아는 총 43.8만명으로 2004년 47.6만명 보다 3.8만명이 감소했고, 2005년 조(粗)출생율은 약 9.0명, 2005년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집계되어 세계 최저 수준에 가까워지자 정부는 매우 당혹해 하며 저출산의 문제의 해법 마련에 부산해 하고 있다. 이에 2005년 5월 18일 제정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법률 7496호)’을 근간으로 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특별한 묘안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장려정책, 경제발전정책, 소득증대 및 분배정책 등은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목표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데 반해 출산대책은 개인의 전체 생활사에 관여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는 결코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친화적 사회 분위기와 기업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생활과 자녀의 양육이라는 가정의 일차적 목표가 기업·사회·국가가 지향하는 목표의 추구와 양립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3. 바람직한 저출산 대처 방안

오늘날의 저출산 문제를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출산 위기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과 한두사람의 훌륭한 정치적 지도자의 영도력이나 강력한 유인효과를 가진 한두가지 단기적 정책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국가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통합적 문제로서 받아 들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저출산의 문제는 사회의 모든 여건을 고려해야 할 복합적 문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개정이유.

육아수당 지급과 같은 경제적 보조금 지급과 같은 단기 정책이나 현 보건 의료체계 내에서의 출산지원정책으로는 저출산 추세를 완화하는 효과를 그다지 크게 기대할 수 없으며, 국가 전체에 걸쳐 있는 통합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근본적으로 본질에 좀 더 접근하여 안심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임신·출산·양육·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저출산 대책은 단순한 인구부양책이 아니라 결혼, 가정, 가족, 그리고 자녀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다시 말해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기꺼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정치적 노력의 결집체이어야 한다.

근·현대 우리나라의 여성인권의 신장 역시 저출산 추세의 중요한 배후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이다. 그와 같은 변화에 동반하여 국민의 기본인권의식이 또한 빠르게 성장하였고, 그러한 인권의식의 변화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치적 갈등상황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의 권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빠르고 광범위하게 성장하고 표현되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의 인권 의식의 신장과 가치관의 변화 및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이나 지위의 변화를 새롭게 조망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양성평등의 견지에서 국가적인 저출산 대처 방안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표면적인 이유로 떠오르지 않고 있지만, 최근 엄청난 파고로 밀려 오고 있으며, 일부 기성세대들은 사회적 문제로서 바라 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의 신장과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강한 애착과 자기 결정의 의지가 학교와 가정에서의 갈등의 숨은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세대만 해도 거의 문제가 되지 않던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은 부모들에게는 자녀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달리 재정립하도록 하고 있고,

자녀들에게는 가정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가정의 불안정과 가족의 해체를 조장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가정에서 뿐 아니라 학교와 사회에서는 이러한 의식있는 아동·청소년을 인격과 기본권리를 지닌 한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교육체계, 입시제도, 법제도 및 사회적 인프라를 전혀 갖추려는 생각을 거의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 학교 및 사회의 갈등속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체계에 실망한 부모와 자녀들은 더 이상 이 나라에 머물 수 없는 상황에서 알지도 못하는 세계 곳곳으로 떠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이는 바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는 저출산 자체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미치며, 이차적으로 또다른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아동·청소년이 우리나라를 떠나고 기러기야빠로 대표되고 있는 우리나라교육체계의 결함으로 인한 가정붕괴의 문제를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우리나라의 정치적 무능력과 무책임, 정책적 무감각 및 국민 개개인의 의식과 감수성의 결핍이 많은 사람들을 학교에서 내몰고 사회에서 내몰고 나라에서 내몰아 세계 방방곡곡에서 사회·문화적 갈등을 겪으며 방황하고 있음을 국민 모두가 절감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 결단과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IV. 결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의 국가위기는 한두가지 단편적인 문제에 대한 급조된 미봉책으로 꾸며진 구식의 인구정책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군으로서, 결혼, 출산, 육아, 교육, 건강 및 질병관리, 노화 등의 개인의 생활사와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 연계된 통합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합계출산율 1.08명이라는 직격탄을 맞

고, 현재의 최악의 상황을 탈출하기 위하여 이미 2005년 5월 18일 제정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법률 7496호)’을 근간으로 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또다시 선언적 의미뿐인 미봉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우리나라 사회전반에 걸쳐 있는 저출산 관련 문제들의 뿌리가 너무 깊고 완고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인구감소정책의 성과를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내에 성공적으로 이룩한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근대 정치, 경제 및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윤리적 가치와 진실성을 외면한 조급한 발전과 단순 계량적 성취의 후유증은 비단 인구정책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단견에서 출발하여, 단기간에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몰아 부쳐 이룬 세계 최고성적의 후유증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앓고 있다는 것을 정부나 정책관련 담당자들은 잊지 않았으면 한다.

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생명윤리, 의료체제와 행정이다.(art3255@hanmail.net)

<참고문헌>

- ▷ 양동교. 2004.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방향. 제90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심포지엄(2004.10.24).
- ▷ 서울경제. 2006. 출산율 1.08명 또 사상최저. <http://news.naver.com>.(2006. 5. 8)
- ▷ 최성락. 2004. 저출산·고령사회에 범정부적으로 적극대처. 나라경제. 2004.3.
- ▷ 조선일보. 2005. 저출산·고령화대책 대통령이 나선다. 2005년 3월 15일자
- ▷ 장혜경. 2004. 저출산대책, 국제적 추세와 시사점. 저출산대책 대토론회(한나라당정책위원회. 2004.7.2).
- ▷ 안명옥. 2004.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제정의 필요성.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한나라당정책위원회 저출산·고령화 TF(2004.9.1).

孫英錄: 1989년 서울대학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사람의 양막세포 초대배양시 17 β -estradiol과 progesterone이 PGE2의 생성과 대사에 미치는 영향), 2001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논문: 위기의 생명을 위한 통합적 정의), 현재 제